

#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9월 23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제156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.(안 제7조의2제2항)

#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의2제2항 “시장이 따로”를 “규칙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7조의2(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 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<u>시장이</u> <u>따</u> <u>로</u> 정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의2(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규칙으로</u> -----.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**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(제7조의2제3항 관련)**

대 상	감면액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</li> <li>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</li> <li>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</li> <li>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8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10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</li> <li>12. “다둥이 행복카드”를 소지한 가족</li> </ol>	<p>전액 감면</p>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 행	개    정    안
<신    설>	<p><u>제7조의2(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